

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
(관련법령 : 소득세법 160조의 3 4항, 법인세법 112조의 2 4항)

위 법령관 관련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에 따라 2025년도 현금분부터 기부(현금)자의 모든 현금에 대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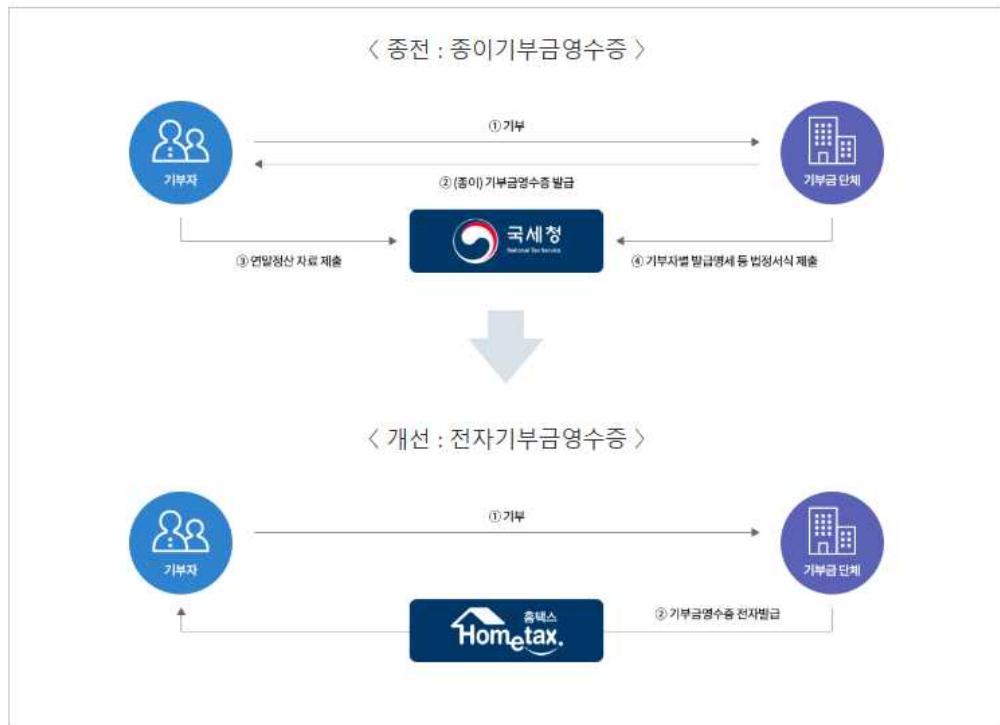
▣ 대상 및 전자기부금 신고기간

1. 대상 :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교회(단체)
2. 신고 기간 : 2026년 1월 1일 (목) ~ 1월 10일 (토)

▣ 「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」란?

- ❶ 기부금단체가 '21.1.1.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흠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 -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,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,
 -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「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」에 자동 반영되고, 소득(법인)세 등 신고증빙 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하며, 법정서식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.

I 기부금영수증 발급 · 관리과정 변화



▣ 교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절차

1. 흠택스에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권한 신청

흡택스에 접속하여 [장려금, 연말정산, 기부금 → 전자기부금영수증 → (기부금단체용)]

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권한 신청 → (세무서담당자)승인 또는 거부] 절차 후 권한부여

- ►‘기부금단체 조회 및 발행권한 신청’ 화면에서 교회명으로 로그인 후 발행권한을 신청합니다.

2. 기부금 영수증 작성 방법

- 일련번호 : 기부금 영수증에 할당된 고유 일련번호를 입력합니다.
- 기부자 정보 : 기부자의 이름, 생년월일, 주소를 기입합니다.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 번호를 포함합니다.
- 기부금 단체 정보 : 교회의 명칭, 고유번호, 주소를 기재합니다.
- 기부내용 : 기부날짜, 유형, 금액 등을 명시합니다.

▣ 별도로 종이서류가 필요하신분은 각자 본인의 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(<http://hometax.go.kr/>)에 로그인하신 뒤에 전자 기부금영수증 메뉴에서 기간설정을 하여 조회하신 뒤 인쇄하시면 됩니다.

▣ 전자기부금영수증은 현금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.

▣ 발급불가사항

- 특정금액만 지정해서 발급
- 현금자 명의변경 및 가족합산
- 개인 현금을 법인 명의로 발급
(법인명의 발급을 원하실 경우, 법인 명의로 현금해 주셔야 합니다.)